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2. 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1월 18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8년 1월 2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1. 28)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개정이유

- 동 주민센터 공무원 정원이 실제 근무인력과 많은 차이가 발생되어 현원을 감안한 정원 재책정으로 동 주민센터별 공무원 인력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일반직 과 기능직의 비율이 각각 78%이상, 20%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 조정
-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라 행정5급 1명 증원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한시 증원된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의 정원이 2007.12.31일자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됨에 따라 일반직7급 1명, 8급 1명을 일반정원으로 증원 조정

나. 주요골자

- 동 주민센터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현재의 현원을 감안하여 증원 조정 - 일반직 증원 : 총 19명(7급 6명, 8급 4명, 9급 9명)
 - 기능직 증원 : 총 53명(9급 2명, 10급 51명)
- 구 본청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1명 증원과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의 동사무소 재배치에 따라 감축 조정
 - 일반직 증원 및 감축 : -1명(5급 +1, 7급 -2, 8급 -1, 9급 +1)
 - ※ 한시적 정원인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2명(일반직 7급 1명, 8급 1명)의 소멸로 일반정원으로 2명 증원(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 기능직 감축 : -65명(8급 -3, 9급 -3, 10급 -59)
 - 별정직 감축 : -1명(7급 -1)
- 구의회사무국 계약직(의원보좌) 7급 2명 정원이 별정직(의원보좌) 6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축 조정
 - 계약직 감축 : -2명(7급 -2)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옥)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 본청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 증원, 7급 이하 2명 감소, 기능직 65명이 감소되는 등 총 66명이 감소하고, 동 주민센터에 일반직 7급 이하 19명, 기능직 53명을 증원하여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면밀한 업무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인 조직의 진단을 거쳐 조직 간 균형 있는 정원책정과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17 |
|----------|-----|

제출년월일 : 2008.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동 주민센터 공무원 정원을 오랫동안 조정하지 않아 실제근무인력과 많은 차이가 발생되어 현재의 현원을 감안한 정원 재 책정으로 동주민센터별 공무원 인력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비율이 각각 78%이상, 20%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 조정
-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라 부서장인 행정5급 1명 증원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한시 증원된 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의 정원이 2007. 12. 31자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됨에 따라 일반직7급 1명, 8급 1명을 일반정원으로 증원 조정 등

2. 주요내용

- 가. 동 주민센터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현재 현원을 감안하여 증원조정
 - 일반직 증원 : 19명(7급 6명, 8급 4명, 9급 9명)
 - 기능직 증원 : 53명(9급 2명, 10급 51명)
- 나. 구분청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1명 증원과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의 동사무소 재배정에 따라 감축 조정
 - 일반직 증원 및 감축 : -1명(5급+1명,7급-2명,8급-1명,9급+1명)
 - ※ 한시정원인 사업별예산제도 전담인력 2명(일반직 7급1명, 8급1명)의 소멸로 일반정원으로 2명 증원(일반직7급1명, 8급1명)

- 기능직 감축 : -65명(8급 -3명, 9급 -3명, 10급 -59명)
 - 별정직 감축 : - 1명(7급 -1명)
- 다. 구의회사무국 계약직(의원보좌) 7급 2명 정원이 별정직(의원보좌) 6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축조정
- 계약직 감축 : -2명(7급 -2명)

3. 참고사항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08. 1. 11~ 1. 16) 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3조”를 “제112조”로 한다.

[별표1]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계란 중 총계 “1,306(4)”을 “1,307(4)”로, 구분청 “969(4)”을 “902(4)”으로, 구의회사무국 “29”를 “27”으로 하고, 동 “212”를 “284”으로 한다.

일반직계란 중 총계 “976(4)”을 “992(4)”으로, 구분청 “667(4)”을 “666(4)”으로 하며, 구의회사무국 “14”을 “12”로 하고, 동 “212”를 “231”로 한다.

일반직 5급란 중 총계 “60”을 “61”으로, 구분청 “26”을 “27”로 한다.

일반직 7급란 중 총계 “272(2)”을 “274(2)”으로, 구분청 “199(2)”을 “197(2)”으로 하고, 구의회사무국 “4”을 “2”로 하며, 동 “44”를 “50”으로 한다.

일반직 8급란 중 총계 “309(1)”를 “312(1)”로, 구분청 “219(1)”을 “218(1)”로 하고, 동 “65”를 “69”로 한다.

일반직 9급란 중 총계 “141”을 “151”로, 구분청 “93”을 “94”으로 하고, 동 “37”을 “46”으로 한다.

별정직계란 중 총계 “14”를 “13”으로, 구분청 “6”을 “5”로 한다.

별정직 7급상당란 중 총계 “6”을 “5”로, 구분청 “3”을 “2”로 한다.

별정직 8급상당란 중 총계 “2”를 “3”으로, 구의회사무국 “2”를 “3”으로 한다.

별정직 9급상당란 중 총계 “1”을 “0”으로, 구의회사무국 “1”을 “0”으로 한다.

기능직계란 중 총계 “313”을 “301”로, 구분청 “295”를 “230”으로 하고, 동 “0”을 “53”로 한다.

기능8급란 중 총계 “44”를 “41”로, 구분청 “42”를 “39”로 한다.

기능9급란 중 총계 “87”을 “86”으로, 구분청 “81”을 “78”로 하고, 동 “0”을 “2”로 한다.

기능10급란 중 총계 “156”을 “148”로, 구분청 “146”을 “87”로 하고 동 “0”을 “5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 구 분 | 총계 | | 구본청 | | 구의회 사무국 | | 보건소 | | 동 | |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총 계 | <u>1,304(4)</u> | <u>1,307(4)</u> | <u>969(4)</u> | <u>902(4)</u> | <u>29</u> | <u>27</u> | <u>94</u> | <u>94</u> | <u>212</u> | <u>284</u> |
| 정무직 계 | 1 | 1 | 1 | 1 | | | | | | |
| 구청장 | 1 | 1 | 1 | 1 | | | | | | |
| 일반직 계 | <u>976(4)</u> | <u>992(4)</u> | <u>667(4)</u> | <u>666(4)</u> | <u>14</u> | <u>12</u> | 83 | 83 | <u>212</u> | <u>231</u> |
| 3급 | 1 | 1 | 1 | 1 | | | | | | |
| 4급 | 7 | 7 | 5 | 5 | 1 | 1 | 1 | 1 | | |
| 5급 | 60 | 61 | 26 | 27 | 2 | 2 | 10 | 10 | 22 | 22 |
| 6급 | 186(1) | 186(1) | 124(1) | 124(1) | 3 | 3 | 15 | 15 | 44 | 44 |
| 7급 | <u>272(2)</u> | <u>274(2)</u> | <u>199(2)</u> | <u>197(2)</u> | <u>4</u> | <u>2</u> | 25 | 25 | <u>44</u> | <u>50</u> |
| 8급 | <u>309(1)</u> | <u>312(1)</u> | <u>219(1)</u> | <u>218(1)</u> | 2 | 2 | 23 | 23 | <u>65</u> | <u>69</u> |
| 9급 | <u>141</u> | <u>151</u> | <u>93</u> | <u>94</u> | 2 | 2 | 9 | 9 | <u>37</u> | <u>46</u> |
| 별정직 계 | <u>14</u> | <u>13</u> | <u>6</u> | <u>5</u> | 8 | 8 | | | | |
| 6급상당 | 5 | 5 | 3 | 3 | 2 | 2 | | | | |
| 7급상당 | <u>6</u> | <u>5</u> | <u>3</u> | <u>2</u> | 3 | 3 | | | | |
| 8급상당 | <u>2</u> | <u>3</u> | | | <u>2</u> | <u>3</u> | | | | |
| 9급상당 | <u>1</u> | <u>0</u> | | | <u>1</u> | <u>0</u> | | | | |
| 기능직 계 | <u>313</u> | <u>301</u> | <u>295</u> | <u>230</u> | 7 | 7 | 11 | 11 | <u>0</u> | <u>53</u> |
| 기능6급 | 8 | 8 | 8 | 8 | | | | | | |
| 기능7급 | 18 | 18 | 18 | 18 | | | | | | |
| 기능8급 | <u>44</u> | <u>41</u> | <u>42</u> | <u>39</u> | | | 2 | 2 | | |
| 기능9급 | <u>87</u> | <u>86</u> | <u>81</u> | <u>78</u> | 3 | 3 | 3 | 3 | <u>0</u> | <u>2</u> |
| 기능10급 | <u>156</u> | <u>148</u> | <u>146</u> | <u>87</u> | 4 | 4 | 6 | 6 | <u>0</u> | <u>51</u> |

※ ()는 총계에 포함된 정원이며, ()는 한시정원임